

### [서식 예]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

# 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###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사건개요
  - 가. 원고는 소외 망 □□□의 처이고, 소외 망 □□□은 19○○. ○. □□주식회 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○○지사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고, 입사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근무도중 비(B)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7년 후 만성간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성격상 잦은



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경화로 발전, 20〇〇. 〇. 〇. 〇〇대학교병원 한방병원에서 조제해준 한약치료제를 복용하였으나,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〇〇병원 및 〇〇대학교 병원에서 3달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20〇〇. 〇. 〇. 〇〇대학교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비형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.

나.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선행사인 인 비형간염의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고, 망인의 치료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발생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써 과로와는 관련 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해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.

#### 2. 불복사유

- 가. 위 망인은 입사시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, 회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매일 1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정도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, 건강이 악화되어 갈수록 회사상황도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및 명예퇴직 등이 진행되었고, 한가정의 가장인 망인으로서는 치료는 커녕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에 벗어나지 못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.
- 나. 또한 위 망인의 주치의 소견서에도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환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위 망인의 질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므로 망인의 상병악화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.

#### 3. 결 어

따라서 피고측 주장대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□□□은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고,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



가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※ 원고의 전치절차

1. 불승인결정 통보일 20○○. ○. ○.

2. 심사청구일 20 ○ ○ . ○ .

3. 심사결정서 수령일 20○○. ○. ○.

4. 재심사청구일 2000. 0. 0.

5. 제결서 수령일 2000. 0. 0.

# 입 증 서 류

1.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

(단, 2007.12.31.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

1. 갑 제2호증의1 가족관계증명서

1. 갑 제2호증의2 주민등록말소자등본

1. 갑 제3호증 부지급통보서

1. 갑 제4호증의1 심사결정서 송부

1. 갑 제4호증의2 심사결정서

1. 갑 제5호증 소견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. O. O. 원 고 O O O(인)

#### 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①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